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안

(지광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79
----------	----

발의연월일: 2019년 1월 14일

발 의 자: 지광천 의원 외 3명

1. 제안이유

-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을 제정하여 평창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연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적용범위(안 제2조)
- 나.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 제7조)
- 다. 국외연수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안 제8조 ~ 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 2019. 1. 10 ~ 1. 15 (6일간)

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연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가 개최하는 국제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서 의원 동반 국외출장을 요청한 경우
5. 기타 평창군의회의회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 여행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공무국외연수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연수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평창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평창군수 또는 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국외연수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연수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연수기간의 타당성 및 경비의 적정성

⑦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연수를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연수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연수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2. 인원은 연수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연수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4.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경비는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사담당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연수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20일 전 까지 연수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7일전 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서에는 국외연수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또는 행사명
2. 목적 및 기간, 일정
3. 대상국가(방문국가 및 경유국가를 포함한다) 및 기관
4. 예상되는 성과 또는 효과
5. 필요한 경비(초청자 측 부담이 있을 경우 전체경비에 대한 그 규모·용도 또는 비율을 기재한다)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9조(연수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국외연수 등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보고서에는 국외연수 등을 실시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8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실시 결과
2. 실제로 거둔 성과 또는 효과(사진, 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3. 사용한 경비 및 정산내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연수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